

## 고시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사고시를 시행하는 데 있다.

###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각 노회 1인씩 26명(여성 1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교체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비 총회원 중에서도 선임될 수 있다.

###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정기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고 출제위원은 호천으로 정한다.

### 제5조 (회의)

정기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를 수시 소집한다. 개회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제6조 (결의)

1. 본회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 결의로 한다.
2. 서면 결의는 전원 일치 찬성 결의로 한다.

### 제7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대표 6인(위원장 포

함), 총회교육원 대표 2인(원장, 교수부장),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2인(원장, 교학부장), 총회 선교사업국 1인(국장), 전문인(약간)으로 구성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제8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 1. 수련대상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대상은 2003년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되며, 다음과 같다.

-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2)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Th.M., M.A.)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3)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박사학위(Th.D., Ph.D.)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 4) 타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단, 위탁교육 교과목 선정은 위원장과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 2. 수련과정 특별사항

군목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예외자로 한다.

### 3. 수련과정 기간

수련과정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4. 수련과정 교과목

교과목 편성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5. 수련과정 주관 및 장소

- 1) 고시위원회 지도 하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시행한다.
- 2) 장소는 총회와 필요한 장소로 한다.

## 6. 수련과정 재정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고시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는다.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총회와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한다.
- 2)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총액의 2분의 1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노회와 수련생의 수를 감안한다.
- 3)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노회 분담금은 수련생의 등록 당시 소속 노회가 부담한다.

## 7. 등록절차

- 1) 총회 고시위원회는 매년 1월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절차를 공고한다.
-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 (1) 등록서류

- ① 신규(1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계속(2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 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서, 제직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2)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 (3)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그 등록 현황을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한다.

## 8. 등록연기신청

수련기간 중 군입대,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목사를 통해, 소속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연기 신청을

한다.

#### 9. 수련과정 이수

- 1) 본 과정은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의 지도), 집중교육, 중간평가로 진행되는 1년차 과정과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회 지도), 집중교육, 종합평가로 진행되는 2년차 과정에 이르는 총 2년에 걸쳐 시행된다.
- 2) 총회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제9조 (수련과정 지도목사)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목사’를 두며, 지도목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목사는 소속교회 당회장(준당회장)으로 한다.
2. 지도목사는 수련생의 목회실습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매 분기별로 해당자에 대한 ‘목회실습 평가서’를 작성한다.
3. 목회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 1) 평가점수는 A(100-90), B(89-80), C(79-70), D(69-60), F(59점 이하)로 하고 F로 판정되면 불합격으로 한다.
  - 2) 불합격 시에는 목회 실습을 1분기 연장할 수 있으며, 불합격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4. 지도목사는 매 분기별로(총 4분기) 작성한 ‘목회실습평가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의 ‘목회실습 평가서’를 취합하여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 제10조 (목사고시)

1. 응시자격
  -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타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 3)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로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2. 고시과목

### 1) 필답고사

- (1) 성경
- (2) 설교
- (3) 교단 헌법

### 2) 면접

소명, 품성, 자질에 대한 종합평가

## 3. 고시의 일시와 장소

- 1) 일시 - 연 2회 실시한다.
- 2) 장소 - 서울을 원칙으로 한다.

## 4. 고시방법

- 1) 합격표준 - 100점 만점에 7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합격된 과목은 1년간 유효하다.
- 2) 서류 심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전담한다.
- 3) 시험지에는 수험번호와 답안만 쓰고 그 외의 것은 일절 금한다.
- 4) 시험지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은 무효로 한다.
- 5) 시험 감독은 본 위원회 위원과 출제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6) 면접시험은 3인 시험관을 1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원 합의로만 합격한다.
- 7) 출제 위원이 채점한 후 시험지를 개봉하고 성적을 집계하는 일은 위원장과 서기가 한다.

## 5. 고시연기

- 1) 군 복무, 유학, 기타 본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고시연기 청원이 있을 경우 해 기한만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 (고시의 수속)

### 1. 서류제출

노회는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를 심의한 후 적격하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일 1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통은 노회가 보존하고 1통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목사고시 청원서
- 2) 목사고시 추천서
- 3) 총회 양식에 의한 이력서
- 4) 최종 출신 학교장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5) 18개월 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
- 6)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7) 증명사진
- 8)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노회 제출용)

###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총회장과 고시위원장 명의로 즉시 해당 노회에 통지하고 발표한다.

## 제12조 (경비)

1. 수험료 -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는 수험료를 목사고시 서류접수 시에 납부하고 수험 번호를 받아야 한다.
2. 예산 - 총회 예산에 의한다.

## 제13조 (총회 고시자료집 집필 및 관리)

1. 총회 고시자료집을 집필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 제14조 (개정 및 시행)

### 1.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고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2. (시행)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시행한다.

1960년 6월 제45회	총회	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본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은 급변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지향하고,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새 시대의 교회 환경에서 목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설명회)

수련과정 설명회는 등록을 마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며 파송예배 등을 실시한다. 그 시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기 : 매년 6월중
2. 기간 :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제3조 (교과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실습 교과목: 예배, 예식, 설교, 심방, 상담, 교육, 행정, 영성과 리더쉽 등의 교역실무를 실습,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2. 집중교육 교과목: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교역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인 정립과 교단 및 목사의 정체성과 기타 전문목회 분야들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 (목회실습)

목회실습은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에서 수련하는 동안 소속 교회의 협조와 지도목사의 지도 하에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훈련하고 실습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하는 동안 소속한 노회의 지도를 받고, 소속 교회에서 수련과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수련생은 소속 노회의 허락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수련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수련방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① 총회 산하기관과 유관 에큐메니컬 협력 및 선교기관
  - ② 개척 및 단독 목회
  - ③ 해외
2. 지도목사와 목사수련생의 관계가 부부나 부모 자녀의 경우, 목회실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외 유학을 앞둔 자나, 특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포함하여 수련과정 동안 교단이 인정하는 전임 전도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예우를 받으며, 소속 노회는 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소속 교회와 협의하여 소속교회가 수련 기간에 필요한 사례비와 경비를 책임지도록 한다.
  4. 소속 교회는 수련생에게 설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련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규적인 설교 기회를 주어 이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제5조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

1.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은 지도목사가 본 시행세칙 제3조 1항의 범위 안에서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정한다.
2. 목회실습이 매 분기별로 운영되는 만큼 총 4분기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6조 (목회실습 기간)**

목회실습 기간은 총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1. 1년차 과정 : 1분기(6월-11월), 2분기(12월-5월)
2. 2년차 과정 : 3분기(6월-11월), 4분기(12월-5월)
3. 목사후보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교회를 사임할 경우, 목회실습과정이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큼 순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집중교육)**

집중교육은 수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그 일정은 매년 8월 말 혹은 9월 초로 한다.

## 제8조 (집중교육 교과목 편성)

집중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은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본 시행세칙 제 3조 2항에 따라 정하되, 1년차와 2년차의 해당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각 교과목을 편성한다.

### 1. 1년차 범위:

성서와 설교구상1, 설교기법1, 교회헌법1, 교단역사와 선교정책1, 목사의 품성과 리더쉽1, 전도방법론1, 교회개척과 모델 연구, 성경공부 지도론, 국제선교, 관혼상제와 목회, 상담의 실제, 영성과 기도훈련, 예배와 찬양(찬송가학/실연), 기독교와 사회변화, 한국의 종교문화(타 종교), 이단 문제, 성서지리, 개혁교회와 장로교 등

### 2. 2년차 범위:

성서와 설교구상2, 설교기법2, 교회헌법2, 교단역사와 선교정책2, 목사의 품성과 리더쉽2, 전도방법론2, 교회행정(공동의회/당회/제직회/회의법)과 재정(재정운용/예결산), 소그룹목회(구역운영/제자훈련 등), 교회력과 예전, 교회학교의 운영방안, 지역 교회의 에큐메니컬선교, 선교와 사회복지, 목회심리 치료, 심방의 실제, 정보화 목회, 기독교 문화선교와 목회, 교화와 예술(미학/건축/음향 등), 부교역자론 등

## 제9조 (목회실습일지, 보고서 작성)

목회실습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에 대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수련생은 매주 목회실습 내용과 느낀 바를 ‘주간목회실습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한다.
2. 수련생은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매 분기별(6개월)로 ‘분기목회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목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수련생은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경을 통독한다.

## 제10조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1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중간평가 모임을 통하여 목회실습과정 동안 얻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 운영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목회현장의 요구와 이의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3. 중간평가의 시기는 1년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실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보고서, 지도 목사가 제출한 평가서를 기초해서 수련생의 1년 과정을 평가하여 수료와 유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종합평가 및 수료)

종합평가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종합평가 모임에서는 수련생이 2년 동안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회방향 결정과 목회지도력 형성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고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총 2년간의 모든 수련과정을 종합평가하고 수료식을 한 후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3. 수료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행한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종합평가의 시기는 2년차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실시한다.

### 제12조 (개정 및 시행)

#### 1.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와 총회 고시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2.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 3. (시행)

이 시행세칙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제정  
2007년 10월 29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8월 11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10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